

등록번호	안전경영팀-2663
등록일자	2023. 12. 07.
결재일자	2023. 12. 08.
공개구분	공개

★대리	안전경영팀장	사장
12/07 17:53 김경민	12/07 18:08 최중익	12/08 09:32 이계문
협조		

2024년 산업안전보건 연간 관리 계획(안)

안전경영팀

2024년 산업안전보건 연간 관리 계획(안)

산업안전보건 연간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사항

1 추진 목표 및 전략

추진 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 전략	체계적 안전·보건 관리			대외 인증관리
추진 과제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KOSHA-MS 인증
세부 추진 과제	- 현안사항·요구사항 파악 - 종사자 의견 청취 채널 내실화 - 안전보건관리규정 체계 강화	-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 위험성평가 개선 - 산업재해 대응체계 안정화	- 직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근무환경 중점 개선 - 직원 건강증진 활동	- 인증유지를 위한 현행에 맞는 매뉴얼·절차서·지침서 개선 '23년 권고·관찰사항 개선

2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남양주도시공사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2조(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 「지방공기업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6조(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 대상시설 및 추진기간: 전 시설장 / 2024. 1.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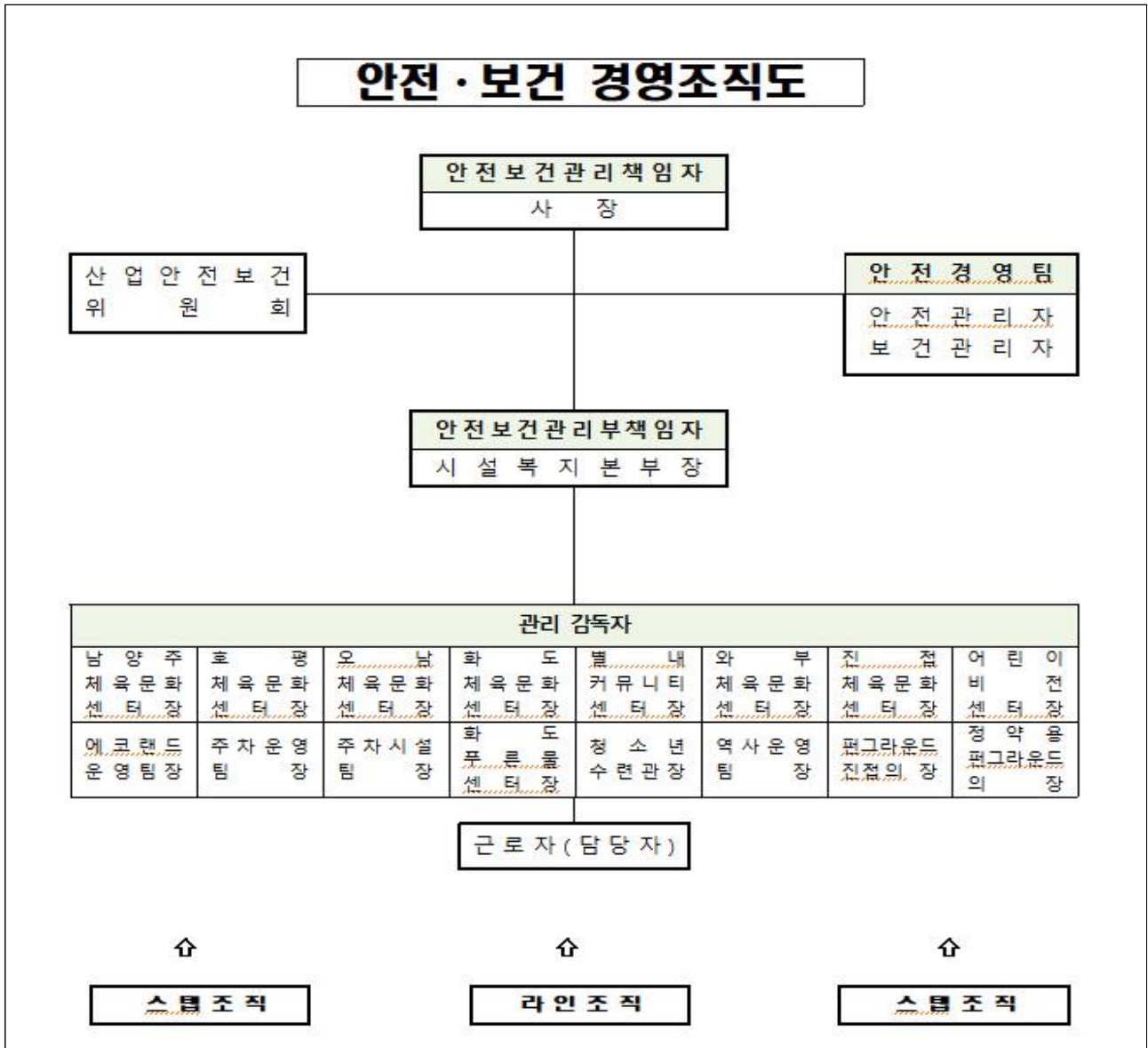
○ 주요내용

구 분	항목별 추진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게시, 법규·요구사항 파악 및 준수평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분기/1회) ▶ 조직의 내·외부 현안사항 및 근로자의 요구사항 파악(반기/1회)
산업안전 관리	▶ 산업안전 정기점검 ▶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제 실시 ▶ 유해·위험기계 기구 파악 및 상태, 안전검사 실시여부 점검 ▶ 작업계획서 작성 및 게시 여부 점검, 산업재해통계분석 및 관리
산업보건 관리	▶ 근로자 건강 상담 및 유소견자 건강관리(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 건강증진 프로그램,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수립 및 시행 ▶ 직무스트레스 평가(2년/1회)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3년/1회)
KOSHA-MS 심사관리	▶ 내부 심사, 경영 검토, 성과 측정 실시 ▶ '23년 유지심사 결과 개선(관찰 및 권고사항)

3 기본현황

1. 안전보건 조직도

- 안전보건 조직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남양주도시공사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
-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고 시 직무를 대행
- (관리감독자) 부서의 장으로서 부서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및 감독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 (근로자) 남양주도시공사 안전보건 규정 준수, 안전·보건활동의 적극 참여

2. 안전·보건 인력 현황

공사 총 인원	안전·보건 인력				
	총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인원	선임자격	배치인원	선임자격
692명	2명	1명	산업안전기사	1명	대기환경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자체 전담인력 배치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보건의 1명 연간 위탁 선임 계약 추진

3.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23년 12월 기준)

연도	일자	주요내용	인원	피해정도
2021 (2건)	1. 19.	퇴근길 보행로 야자매트에 걸려 넘어짐 (출퇴근 재해)	1명	오른쪽 손목 하단 골절(휴업 42일)
	10. 15.	벌목작업 중인 엔진톱에 손바닥 베임	1명	오른쪽 손바닥 베임 (휴업 10일)
2022 (4건)	3. 30.	테라스 출입구 바닥 경사면에서 넘어짐	1명	왼쪽 어깨뼈 골절 (휴업 62일)
	7. 11.	수영 강습 중 회원의 발에 차임	1명	우측 견갑대 염좌 (휴업 14일)
	8. 12.	임시작업로 설치작업 중 추락	1명	등허리 및 골반의 타박상 등(휴업 14일)
	9. 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수업 중 빅발리볼에서 넘어짐	1명	오른쪽 슬개골 탈구 (휴업 7일)
2023 (2건)	6. 5.	자전거를 타고 출근중 동물이 뛰어들어 피하려다 넘어짐 (출퇴근 재해)	1명	다리뼈 골절 (휴업 84일)
	8. 8.	안전근무중 링크장 입구의 문턱을 넘어다 발목 접지름	1명	발목 염좌 (휴업 14일)

4 2023년도 주요 활동실적

구분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추진배경: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 추진시기: 2023년 3월, 4월(임시), 6월, 9월, 12월 · 추진대상: 위원장,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5명 · 추진결과: 보고안건 8건, 의결안건 2건 안건 상정 ※ 4분기 정기회의(미실시) 안건 제외																				
안전보건교육 시행	· 추진배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수준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예방 · 추진시기: 2023년 1월~12월 · 추진대상: 전 직원 · 추진결과: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등 법정필수 교육 전직원 이수 완료																				
작업환경측정 시행	· 추진배경: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 수치를 측정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 · 추진시기: 2023년 6월(상반기), 12월(하반기) · 추진대상: 화도푸른물센터 ※타 시설장은 측정 비대상 확인서 발급 완료 · 추진결과: 총 12개 항목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정상)' 판정																				
위험성평가 시행	· 추진배경: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감소대책 수립을 통한 안전사고 ZERO화 · 추진시기: 2023년 6월(상반기) 12월(하반기), 상시 · 추진대상: 시설복지본부 전 시설장 · 추진결과: 상반기 정기위험성평가 결과 총 155건 개선완료, 하반기 평가 시행중																				
근로자 건강진단	· 추진배경: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 파악하여 일반 질병·직업성 질병 예방 · 추진시기: 2023년 1월~12월 · 추진대상: 전 직원(일반건강진단),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특수건강진단) · 추진결과 ※ 2023. 12. 5. 기준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수검대상</th><th colspan="2">대상인원</th><th rowspan="2">실시율</th><th rowspan="2">비고</th></tr><tr><th>대상</th><th>실시</th></tr><tr><td>일반 건강진단</td><td>사무직 근로자(1회/2년) 비사무직 근로자(1회/1년)</td><td>490</td><td>250</td><td>71%</td><td>12월 한 100% 실시 예정</td></tr><tr><td>특수 건강진단</td><td>유해인자 취급 근로자</td><td>95</td><td>90</td><td>95%</td><td>12월 한 100% 실시 예정</td></tr></table>	구분	수검대상	대상인원		실시율	비고	대상	실시	일반 건강진단	사무직 근로자(1회/2년) 비사무직 근로자(1회/1년)	490	250	71%	12월 한 100% 실시 예정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95	90	95%	12월 한 100% 실시 예정
구분	수검대상			대상인원				실시율	비고												
		대상	실시																		
일반 건강진단	사무직 근로자(1회/2년) 비사무직 근로자(1회/1년)	490	250	71%	12월 한 100% 실시 예정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95	90	95%	12월 한 100% 실시 예정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추진배경: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발굴 후 개선하여 질환 예방 · 추진시기: 2023년 7월 · 추진대상: 총 15개 사업장 ※2020년 실시 이후 3년 경과 사업장 13개 및 신규 2개 · 추진결과: 통증호소자 18명, 관리대상자 41명 발굴 후 개선계획 수립 완료																				
직무스트레스 평가	· 추진배경: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 및 개선하여 건강장해 예방 · 추진시기: 2023년 6월 설문완료 후 현재 평가결과 분석중 · 추진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 · 추진결과: 2024년 1월 내 결과분석 후 대책수립 예정																				

5 2024년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 정기점검 점검주기 변경	- 변경사유 · 시설장 담당자들의 점검 부담으로 인해 법적 점검주기가 정해지지 않은 점검 간소화 · 기존 처벌 점검으로 사업장 방문 시 처가 다를 경우 인접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아 익월에 불필요하게 인접지역 중복 출장 - 변경내용 · 점검주기 확대(기존: 2개월 1회 → 변경: <u>분기별 1회</u>) · 점검방법 변경(기존: 처벌 사업장 점검 → <u>권역별 사업장 점검</u>)
위험성평가 시행절차 변경	- 변경사유: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 변경내용 · 기존 연 2회 <u>정기평가 내용 간소화</u>(추가항목에 대해서만 실시) · <u>최초·수시·상시 위험성평가 도입</u> · TBM 방식 변경을 통해 수시 위험성평가와 <u>업무 일원화</u>
작업환경측정 대상 변경	- 변경사유: 비대상확인서 제출 사업장 미실시 - 변경내용: <u>측정대상 변경</u>(기존: 전 시설장 → 변경: 화도푸른물센터) ※ 비대상확인서 제출 사업장도 작업공정 변경 · 추가 시 30일 이내 실시
직무스트레스 평가 대상 변경	- 변경사유: 법적으로 직무스트레스 평가대상은 정해지지 않아, KOSHA MS 관찰·권고사항에 따라 <u>고위험군 집중 평가</u> - 변경내용: <u>평가대상 변경</u>(기존: 전 직원 → 변경: 고위험군 직원) ※ 고위험군: 야간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 등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대상 변경	- 변경사유: 근골격계부담유해요인 조사는 법적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새로 신설된 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 변경내용 · 2021년 조사를 실시한 <u>화도푸른물센터만 금년도 조사</u> 대상 · 푸른물센터 이외 시설장은 법적기한에 따라 <u>2025년 이후 실시 예정</u> · 사업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만 1년 이내 실시 예정

6 2024년 세부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제

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령요지 게시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 추진일정: 연 1회
- 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개정내용 포함) 법령 요약 게시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부서별 문서 발송
- 게시장소: 사업장 운영사무실, 중앙감시실, 직원 휴게실 등

나. 법규 · 요구사항 파악 및 준수평가

- 관련근거: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검토 절차서(NCUC-SHP-05)
- 추진일정
 - 법규 파악 및 정기 준수평가: 반기 1회
 - 개정내용 검토: 연 1회
- 주요내용
 - 안전보건경영 활동 시 공사에 적용되는 법규의 등록 및 준수 평가 실시
 - 내부심사를 통한 준수 여부 확인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구성인원: 위원장 1명, 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대표 1명, 근로자위원 5명
- 개최시기
 - 정기회의: 분기 1회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요내용
 - 공사 전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
 - 근로자 의견 수렴(안전제안활동 등) 및 개선사항 보완조치 시행

2. 산업안전관리

가. 산업안전 정기점검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점검방법: 자체 안전관리자 권역별 현장 방문점검
- 점검내용: 시설장의 불안정한 환경 및 상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등
- 개선활동: 개선완료보고서 취합 및 차후 현장방문 시 조치사항 확인
-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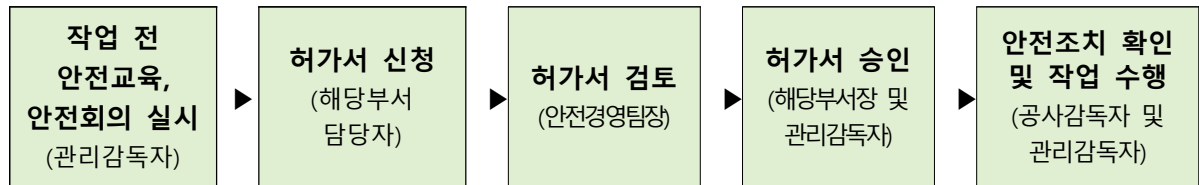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점검 대상	시설복지본부 전 시설장 (1분기)			시설복지본부 전 시설장 (2분기)			시설복지본부 전 시설장 (3분기)			시설복지본부 전 시설장 (4분기)		

나. 위험성 평가 실시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평가자: 관리감독자 및 시설별 담당자 ※ 평가 전 담당자 위험성평가 전문양성교육 수료
- 평가대상: 시설복지본부 전 사업장
- 평가시기
 -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또는 공사 실착공일 이후 1개월 이내
 - 정기평가: 반기 1회 이상
 - 수시평가: 기계·기구·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산업재해 발생 시
 - 상시평가: 아차사고 발굴 시, 작업 전(TBM)
- 평가내용
 - 기계기구·설비 사용물질, 작업 등에 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 조직 내·외부 현안사항,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
- 평가방법
 - 근로자 청취조사표, 아차사고·위험요인 신고센터,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수집
 - 사업장 담당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표 및 개선실행계획서 작성

다. 안전작업허가제 실시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추진내용: 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 전 안전회의(TBM), 안전교육 실시 및 보수·정비 수행
- 시행절차



라. 유해·위험기계 기구 파악 및 상태 점검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점검내용: 방호장치 유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 여부 등
- 점검주기: 반기 1회
- 점검방법: 유해·위험 기계·기구 현황 취합 및 현장방문시 조치사항 확인

마.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여부 점검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검사대상: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기계기구(압력용기 등)
- 검사시기: 2년 1회 ※사업장에 설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실시 후 2년마다 실시
- 점검방법: 안전검사 결과서 취합 및 자체안전관리자 방문점검
- 소요예산: 금3,350,000원(금삼백삼십오만원)
- 대상현황

구 분	보유장비 수			
	압력용기	호이스트	크레인	컨베이어
총 계	43	21	9	2
에코랜드	1	1	-	-
푸른물센터	21	20	9	2
편그라운드 진접	1	-	-	-
역사운영팀	10 (별내3,오남3,진접4)	-	-	-

바. 작업계획서 작성 및 게시 여부 점검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대상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 점검내용
 - 중량물 취급작업: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위험예방 안전대책 등
 - 차량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 점검방법: 자체 안전관리자 정기점검 시 작성 및 게시여부 점검(분기 1회)
- 개선활동: 현장 지도 즉시 개선 및 시설장별 개선계획에 의한 보완조치

사. 산업재해 통계분석 및 관리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주요내용
 -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실시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3. 산업보건 관리

가. 산업보건 정기점검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 점검방법: 자체 보건관리자 권역별 현장 방문점검
- 점검내용: 밀폐공간작업 등 보건관리업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 개선활동: 개선완료보고서 취합 및 차후 현장방문 시 조치사항 확인
- 점검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점검 대상	시설복지본부 전 시설장 (1분기)			시설복지본부 전 시설장 (2분기)			시설복지본부 전 시설장 (3분기)			시설복지본부 전 시설장 (4분기)		

나. 근로자 건강진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주요내용

- 일반 건강진단 대상자별 진단 안내 및 결과표 취합관리
-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유해물질 취급자) 진단 실시
- 정기적 건강진단으로 유소견자 파악 및 건강보호 유지

○ 대 상 자

구분	대상/주기	주기	내용	비고
일반 건강진단	사무직 근로자	1회/2년	- 시기: 연중 - 건강진단 실시자 결과표 제출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기록보관: 3년	
	비사무직 근로자	1회/1년		
특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물질별 상이	- 질병 소견자 2차 진단 실시 - 건강진단 실시자 결과표 제출 -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기록보관: 5년 ※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 결과표: 30년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물질별 상이	- 시기: 대상자 최초작업 배치전 실시 - 물질별 주기에 따른 배치 후 진단 실시 - 질병 소견자 2차 진단 실시 -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기록보관: 5년 ※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 결과표: 30년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의학적 소견이 있을시	-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소요예산: 금12,220,000원(금일천이백이십이만원) ※ 특수건강진단 해당

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대 상: 공사 전 직원
- 추진시기: 2024년 상반기(금연클리닉), 하반기(고혈압, 모바일 헬스케어)
- 실시기관: 남양주시 보건소(건강증진팀)·정신건강복지센터
- 주요내용: 모바일 헬스케어, 금연클리닉, 고혈압·당뇨병 관리 실시
- 소요예산: 무료

라.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수립 및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
- 시행시기: 해당 상황 발생 시 항목별 연 1회
- 시행방법: 자체 보건관리자 수립 및 시행
- 주요내용: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등
- 시행관리: 위험요인 감소와 직업병 예방

마. 작업환경측정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등)
- 측정대상: 화도푸른물센터 ※비대상 확인서 발급 사업장도 작업공정 변경·추가 시 30일 이내 재측정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설
 -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측정 예외
- 측정주기
 -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 측정(작업공정, 작업환경 변경시 30일 이내)
 -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1회 이상 측정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 측정
- 측정방법: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현장 방문점검
- 개선활동
 - 작업 환경을 측정·평가하여 시설·설비 개선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유해인자 사전 파악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
- 소요예산: 금9,600,000원(금구백육십만원)

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조사대상: 화도푸른물센터 ※ 기존 사업장은 2023년 실시 이후 법적기한인 2026년 실시 예정
- 조사방법: 현장 확인 및 관련서류(체크리스트, 유해요인조사표, 증상조사표 등) 작성
- 주요내용
 - 작업장 상황조사: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 작업조건조사: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 증상조사: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사.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관리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 평가시기: 2024년도 상반기 내
- 평가대상: 야간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 등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
- 평가방법: 8개 하부영역의 총 43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 작성
- 주요내용
 - 매뉴얼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예방 일상관리
 - 근무환경 등 개선사항 보완

4. KOSHA-MS 심사 관리

가. KOSHA-MS 연장심사 결과(관찰 및 권고사항) 개선

- 주요내용(총 15건)
 - 관찰사항: 7건(위험성평가 절차서 일부 개정 등)
 - 권고사항: 8건(연간안전보건계획 수립 전 조직의 위험성평가 실시 등)
- 개선방안: 관찰 및 권고사항 항목별 담당자 지정 조치계획 수립하여 개선
- 실적관리: 성과측정 시(상·하반기) 추진경과 반영 및 미비사항 추가 보완 시행
- 소요예산: 금2,400,000원(금이백사십만원)

나. 내부심사 실시

- 관련근거: 내부심사 절차서(NCUC-SHP-17)
- 추진일정: 반기 1회 ※ 내부심사 시행 전 내부심사 전문양성교육 시행
- 심사내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법규 이행 여부 등 부적합 사항 심사
- 심사방법: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활용
- 결과활용: KOSHA-MS 연장심사 대비 부적합사항 개선 및 결과보고

다.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관련근거: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서(NCUC-SHP-16)
- 추진일정: 반기 1회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 연간관리 계획 기준 달성정도, 시행 여부
 - 측정결과 타당성 검토 및 시정조치 시행
- 결과활용: 부서별 당해 연도 산업안전관리 분야 내부평가 반영

라. 경영자 검토 실시

- 관련근거: 경영검토 절차서(NCUC-SHP-18)
- 추진일정: 연 1회
- 검토내용
 - 안전보건상의 성과 및 개선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의 충족성
 - 사업장의 환경변화 및 법 개정 등 내·외부적인 요소 등

5.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 추진배경: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시민과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업무관련 상해 및 건강상 장애를 예방
- 추진내용
 - 기존 안전경영방침 6개 중점사항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반영
 - 안전보건체계 인프라 구축 및 목표 재해율 설정
 - 전 시설 안전보건경영방침 배포 및 게시
 - 안전보건경영방침 내용 확인 및 숙지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
-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안)

남양주도시공사 안전경영방침	
공사의 전 임·직원은 시민과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이 최우선 핵심 가치를 인식하고, 안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을 적극 이행한다.	
1.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	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직원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안전경영을 실천한다.
2.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시민과 임·직원의 안전은 모든 임·직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임·직원 모두가 안전경영과 관련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안전관리체계 이행	안전보건경영체계,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을 준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의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4.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	안전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임·직원의 참여와 소통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5. 안전보건 법령 준수	중대재해, 철도안전, 재난안전, 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023년 12월 1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끝.